

법인이사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위상 재정립

신 현 직

계명대 공법학과 교수



1. 머리말

그
□ 년 상반기 중에 윤곽을 드러낼 교육개혁
안과 사법개혁안은 현정부의 개혁작업
의 분수령이자 정권평가의 핵심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지난해 후반기에 교육개혁위원회에 의해
제시된 '교육개혁 11대과제'는 전반적인 교육
개혁의 과제로서 매우 장기적인 것이며, '우선
추진할 3대과제'인 '교육재정의 확충', '대학교
육의 국제경쟁력 강화',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제고'라는 것도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각 집단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듯하다.

대학의 문제에 한정하여 볼 때 대학종합평가
인정제를 바탕으로 하여 선별적인 재정지원을
하면서 단계적인 정원자율화와 학사자율화의
실시를 제시하고 있고 사학의 이사회 구성을
개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경쟁
력 강화의 논리에 입각한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의 부작용과 문제점은 이미 여러 곳에서 제기
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에서의
친·인척 비율 상한의 문제도 거센 반발에 부
딛치고 있다. 94년 11월 10일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교육개혁위원회 제4소위원회의 대학교
육의 개혁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행
정체제의 개혁방안으로 교육부와 별도의 대학
관리기구의 설치, 준칙주의에 의한 대학 및 대
학원의 설립, 대학정원의 단계적 자율화, 대학
총장후보 추천위원회 및 교수자치기구의 법제

화, 일부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각 대학의 현안이 되고 있는 학칙자율화, 교수협의회 내지 교수평의회와 학칙상 의결기구화의 문제는 밀려나 있고 정부와 대학, 법인과 대학 간의 의사결정상의 권한관계 등을 정립하여야 할 교육관계법령의 체계적인 정비는 그 내용이 극히 추상적이거나 추진일정이 요원한 실정이다. 전국 각 대학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총장선출, 기타 대학의사의 최고결정권에 관련된 대학의사결정기구의 제도적 확립과 기타 대학기구와의 관계설정은 시급한 현안일 뿐 아니라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일정상 뒤로 밀려있다는 사실은 자칫 교육개혁작업 자체를 공동화시킬 우려마저 크다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법인이사회와 대학평의원의 위상을 점검해 보고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교육관계법령상의 지위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관계법령에서는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사립대학에서는 법인이사회를, 국·공립대에서는 대학평의회를 상정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당해 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정관의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국·공립대학에서는 설치주체인 국가나 공공단체가 직접 학사운영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학의 자치에 위배되므로 제정부담은 하되 감독권을 행사하는 데 그치고 대학운영은 자치기구로서의 대학평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법제라 할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교육부가 총장을 통하여 권한행사를 하여 왔고 대학

평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1) 대학평의회

과거의 교육법 제117조(국립대학교평의회)에서는 종합대학교인 국립대학교에 한해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그 조직은 각 단과대학장, 교수와 교육에 저명한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 자로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90년 4월 7일 사립학교법에서 제26조의 2를 신설하여 사립대학에서도 '대학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91년 12월 31일 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하는 '국·공립대학'에 '대학평의회'를 설치토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그에 따른 교육법시행령을 보면 87년 11월 24일의 개정으로 방송통신대학과 개방대학을 포함시켰고, 임기 2년의 40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단과대학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부총장, 대학원장, 교무처장, 학생처장)와 교육에 저명한 인사(당해학교 교원 제외)의 수를 1/2 이내로 하도록 하였다(제139조).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제140조), 총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토록 하였다(제141조).

평의회의 심의사항으로는 ① 대학 또는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② 학부, 학과 또는 강좌의 설치, 폐지, 운영과 그 교원 조직에 관한 사항, ③ 학칙, 기타 제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④ 연구비, 장학금, 기타 제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⑤ 예산운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⑥ 교원인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⑦ 기타 대학의 장이 대학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요구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다(제142조). 이 중 ⑤, ⑥, ⑦

은 87년 11월 24일에 개정 또는 신설된 것이다.

현행법상의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사항만으로 보면 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의결권이나 그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뿐 아니라 총장이 모든 평의원을 선임하는 구성이고 보면 현재의 교무회의와의 관계에서 옥상옥일 뿐 아니라 외부인사까지 위촉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외면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3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법 제24조(1991. 3. 8 개정)에 따라 국·공립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임명추천을 위한 총장·학장추천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그것은 교수들에 의한 총학장선출제의 현실을 인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법령상의 대학평의원회가 갖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에 대한 고려가 없었거나 이를 부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87년 이후 전국 각 대학들이 교수협의회를 창설하고 총학장의 선출 등을 통하여 학내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해 감에 따라 90년 4월 7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제도는 더 이상 국립대학의 것만은 아니게 되었으나, 이사회와의 관계설정도 없이 단지 하나의 조문만을 끼워 넣은 것이어서 처음부터 그 실효성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전시용에 불과한 것이었다.

2) 법인이사회

사립대학을 설치하는 학교법인에 관한 법적 통제는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정도로 강하다는 법인측의 반발을 살 만큼 강한 것이었으나, 90년 4월 7일 이후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은 법인이사회의 전횡과 대학 자율성의 침해라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기능으로서는

① 학교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86. 5. 5 단서 - 대학의 예결산 제외 - 삭제), ②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⑤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90. 4. 7 단서 - 대학교원임면의 제외 - 삭제), ⑥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⑦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⑧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6조). 이는 법인이사회가 대학운영에 관한 전면적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학의 예산, 결산 및 교원임면권마저 대학으로부터 법인으로 이전되는 개정과정은 법인의 대학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볼 때, 이사의 선임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20조), 이사상호간 친·인척 관계의 비율상한선을 2/5(90. 4. 7 개정 이전에는 1/3)로 제한하고 있고, 총장을 제외한 교직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장의 다른 학교법인 이사장의 겸직금지규정은 삭제하였다(제23조, 90. 4. 7 개정). 학교법인은 총장임면권(제53조) 및 교원임면권을 가지되 대학교원에 한하여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 또는 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의 기간임용제(교수제임용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3조의 2). 또한 정관변경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45조).

따라서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법인이 대학의 재정과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원의 이사회 참여마저 원천봉쇄함으로써 폐쇄적인 법인이사회가 대학과 대학구성원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현행법의 대학 자율성 보장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

다. 그리하여 많은 대학들에서는 교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총장선출을 시행함으로써 법인의 임명권을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가고, 교수대의 기구로서의 교수평의회가 대학차치의 주체로서 학칙상의 의결기구로 기능하기 위한 작업들이 전개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학칙인가권의 남용과 법인 또는 총장의 방해로 갈등을 겪고 있다.

3. 각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외국의 예를 보면 대학에 관하여 중앙정부가 규제하는 법률을 갖고 있는 예가 많지 않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학의 비중이 크고 교육과 대학의 자유가 확립된 영미법계의 나라인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이나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외에는 대학은 물론 초·중등학교의 조직이나 규제를 위한 연방법률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또한 법인이사회의 구성이나 권한행사가 대학구성원을 배제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설립자가 개인적 사기업으로 생각하였던 사학인식 또한 이미 60년대를 고비로 사라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설립자나 이사회가 ‘校主’ 내지 ‘財團主權’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히 주장하면서 학교를 개인재산과 같이 사실상 지배하는 예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대학과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법제개혁이 전제되는 교육개혁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국립대학만이 존재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대학기준법 내지 고등교육기준법이 최소한의 준칙으로서 존재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기준법에서는 학칙제정과 총장선거를 위하여 중앙합의기관이 구성되어야 하며, 이 기관에서는 연구, 예술창작, 교수와 교수임용에 직접적

으로 관련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학의 대표기관은 교수, 학생, 조교, 기타 협력자로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3조 및 제38조). 프랑스의 고등교육기준법에서는 대학행정의 자율을 위하여 80인 이내의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평의회를 설치하되 그 구성은 교수, 연구원, 학생, 직원, 기타 능력이나 지역활동에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선출된 교외지식인으로 하고 있다(제11조 내지 제18조). 이와 같이 교수를 중심으로 한 대학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대학평의회가 대학의 명실상부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수많은 교육관계법률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학교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도 대학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규정만 두고 있으며, 사립학교법도 학교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뿐이고 우리와 같이 교원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시행령들에서도 우리처럼 실질적인 법규사항을 갖는 방대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만 갖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각 학교는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의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대체로 교수회 선출의 전임교수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학생대표, 직원대표, 기타 동창회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에 이사는 5인 이상으로 하되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당해 학교법인의 평의원 중에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선임된 자, 기타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해 선임된 자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 중 각 임원에 대하여 그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1인을 넘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제35,38조). 학교법인에 두는 평의위원회는 이사 정수의 두 배를 넘는 수의 평의원으로 조직하며 이사장 내지 이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평의위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되 별도의 의장을 두며, 평의원 총수의 1/3 이상의 평의원이 요구한 경

우에는 이사장이 소집하여야 하며(제41조), 평의회는 학교법인의 업무 혹은 재산상황 및 임원의 업무집행상황에 관하여 임원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자문에 답하고 임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43조). 이사장은 예산, 차입금, 중요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합병, 해산, 수익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기타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정관에 정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만 하며(제42조), 매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평의회에 결산을 보고하고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제46조).

그에 비하여 우리의 법제는 일본의 교육관계 법제를 모방하였으면서도 법률에 규정된 최소한의 사항 외의 사항은 방대한 분량의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규제하고 총학장을 통한 교육감독권의 행사를 통하여 사실상 정부가 대학을 직접 통제하는 방식을 유지하여 왔다. 특히 사립학교법의 경우, 대학구성원이 참여하는 평의회제를 통하여 이사회를 직접 통제할 수 있고 이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이사회의 일방적인 권한만 있을 뿐 총장을 제외한 대학구성원들은 이사회에의 참여조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현행법상 대학평의회제도의 개혁방안

일본의 교육법 체계를 형식적으로 도입한 우리 교육법 체계에서도 대학평의회의 제도를 국립대학에만 허용하는 법제를 채택하였었고 90년부터 사립대학에도 확대하였지만,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이어서 구성조차 되지 않은 채 사문화되어 왔다. 그 이유는 어차피 그 구성이 관련집단으로부터 선출되는 대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

람들로 구성되며 기능 또한 자문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총장을 비롯한 소위 학교당국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할 뿐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기구이며 교수, 기타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기구이기 때문이었다. 현행법상의 대학평의회 제도를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대표성 있는 기관으로 하엿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당장 그 제도를 시행할 수도 없다. 그것은 실질적 권한을 갖는 대표성 있는 기구로의 법개정 의사가 교육당국에게는 없으며, 그러한 변화가 없는 제도에 현재의 교수협의회들이 동의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법의 틀 속에서나마 진정한 의미에서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현행법상의 대학평의회제도를 개선하여야만 한다. 즉, 교육법 제117조에서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를 '대학의 운영을 위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로 바꾸고,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교육법'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동법 시행령 제139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의 '대학의 장이 위촉하는 40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되 보직교수 및 교육에 저명한 인사 중에서 위촉하는 평의원의 수는 전체의 1/2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교수회에서 선출된 전임교원, 보직교수, 학생대표, 조교대표, 직원대표, 기타 총장이 위촉하는 학교협력자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의 평원으로 구성하되 교수회에서 선출된 전임교원의 수는 전체의 1/2 이상, 보직교수와 총장이 위촉하는 학교협력자의 수는 전체의 1/4 이내'로 하고 '기타 사항은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교육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교수회 선출의 전임교원이나 학생대표, 조교대표, 직원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구를 인정

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도 교수회 선출의 전임교수를 제외하고는 학생대표나 조교대표의 참여는 실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우리 국민의 정서는 국회 등 대의기구의 대표성에 대한 불신이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선거에서 보듯이 간선제를 부정하고 직선제를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고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총장 직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의미가 상설적 회의체로서가 아니라 대학의 최고 집행자인 총학장의 선출권과 분쟁 발생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정통성을 갖는 기구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총회의 모습이란 학생과 직원 등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로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하기에 어쩔 수 없이 전체교수집단에 맡기되, 상설적 회의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대의기구로서의 대학평의원회에는 학생, 기타 구성원의 참여가 가능하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학평의원회의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과도기적으로라도 기존의 전체교수회 또는 그 대의기구로서의 교수평의회가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되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아울러 그러한 평의원회제도는 국립대나 사립대 어느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당장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5. 법인이사회의 개혁방안

우리의 사립학교법은 시대적 정치상황의 필요에 의해 정부와 법인 간의 관계에서만 부분 수정된 것으로 사립대학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고려를 결한 것이었고, 이사회의 기능과 구성 간에 최소한의 관련성조차 고려치 않았기에 끝

임없는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과 교수집단 간의 대립만 증폭시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능과 구성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설정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대학의 상위기구로서의 법인이사회와 정관을 대학운영에 강요한다면 대학의 자율성은 파괴되고 종래의 대학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의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기능과 구성 중 어느 하나를 유지하는 대신 다른 하나를 대폭 개편하여야 한다. 우선 현행법에서와 같은 이사회의 구성을 유지한다면, 즉 교원, 기타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이사회 자신만이 이사회를 계속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체제를 유지한다면 법인이사회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야만 한다. 즉, 출연재산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권한만 인정하고 기타 대학의 인사 및 재정권한 등의 대학운영권은 학칙을 최고규범으로 하여 대학 자체에 맡겨져야 하며 그 기능을 대학평의원회나 교수평의회가 맡도록 하여야 한다. 반대로 법인이사회의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려 한다면, 즉 직접적인 대학운영 권한을 유지하려 한다면 법인이사회의 구성을 대폭 바꾸어야만 한다. 즉, 대학평의원회 또는 교수평의회가 다수로 참여하는 이사회의 구성이 요구되며, 이사회의 존립과 권한행사가 항상 대학평의원회나 교수평의회에 의존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일부 국립대학의 특수법인화가 교육개혁위원회의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교수대표, 동문대표, 학부모대표, 기타 지역사회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것은 현존하는 사법인인 학교법인과 관계에서 대학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인과 대학간의 관계정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공법인과 사법인이라는 차이도 법인전입금이 극히 미약하고 대학재정을 거

의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사립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하여 설립주체의 연혁적인 차이로 줄여가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87년 이후 민주화의 과정에서 종래의 교육부의 직접적인 대학통제 방식이 완화되면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국립대학은 종래 최종결정권을 갖던 정부의 권한행사가 줄어들어감에 따라 총장이 아닌 합의체의 최고사결정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교수(협의)회 또는 교수평의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재정확보 등의 대학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특수법인화의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에 비하여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90년의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법인의 권한강화와 법인에 대한 정부통제의 약화는 도리어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양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불씨를 낳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그것은 영미의 사립대학에서 보듯이 법인에 대한 정부통제는 최소화되고, 그 대신 구성원들에 의한 이사회 견제의 장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채 왜곡되어온 우리 사학의 현실을 방치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의 현실이 어차피 영미의 자유방임체제로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보는 것과 같은 대학기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것은 대학과 초·중등학교의 차별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며, 대학에서의 교수와 학생의 지위나 역할에서 국립과 사립의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아울러 전반적인 법체계의 재정비와 함께 교수를 비롯한 대학구성원들이 더 이상 정부나 법인과 대립하면서 갈등하는 소모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대학의 최고사결정기구가 각 구성원들의 적절한 참여를 통해 구성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교수평의회제, 현행 법상의 대학평의회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각 대학 현실에 맞는 최고사결정기구를 형성하도록 법제적으로나 교육감독권을 통해서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신현직/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제3사관학교 법학전임강사, 독일 본 대학 연구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계명대 공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저로 『주석헌법』이 있고, “기본권과 제도보장”, “교수회자치소고”, “사립학교의 법적 지위”, “교육기본권에 관한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